

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 운영동향

A Case Study on Technical Regulation Framework of Radio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Kingdom

백종현(J.H. Paik)

기술기준연구팀 연구원

김용환(Y.H. Kim)

기술기준연구팀 책임연구원

조평동(P.D. Cho)

기술기준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2001년 4월 이후 유럽연합지역에서는 유·무선통신기기 인증 지침(R&TTE Directive: 1999/5/EC)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 간에는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합의 정책의 목표였던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에 의한 유·무선 통신기기의 기술 규제 운영체제가 정립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 부분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I. 서론

유럽지역은 1998년 마스트리히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2002년에는 유로화의 전면 통용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통합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통신기기와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하여는 “합의정책(harmonized policy)”의 기초¹⁾ 하에 일련의 지침들(directives)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개별 회원국들의 독특한 유·무선통신 규제환경을 범 유럽 차원에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내 서비스 환경의 자유화와 관련 통신 규제 환경의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 중 최근 주목할 만한 것은 유·무선통신기기의 제조, 유통, 출시 관련된 기술규제동향이다. 현재 유선통신기기의 출시, 보급과 관련한 규제체제는 유럽연합중심의 단일규제체제로 변모하면서 이 틀 안에서 제조자 자율에 의한 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차원의 규제와 개별 회원국들의 전파운용 환경을 고려한 이원적 규제체제를 형성하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의 유·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합의정책 체제의 배경과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개별 회원국의 무선통신기기의 기술규제 운영동향을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국내 문헌들에서 대개 유럽의 통신정책을 이야기할 때 ‘harmonized policy’를 ‘조화정책’으로, ‘harmonized standard’를 ‘조화표준’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차원의 표준이 유럽 개별국의 다양한 규제 환경을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개별회원국 표준화기구 또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 하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합의 표준’ 또는 ‘합의된 형태의 유럽표준’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II. 유럽연합의 무선 통신기기 기술 규제 운영 구조

1. 유럽연합의 합의정책의 개요

유럽연합에서 유·무선 통신기기들의 인터페이스와 유럽연합 차원의 주파수 등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통해 유·무선 통신기기의 기술규제에 대한 주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은 유럽연합차원의 경쟁의 촉진과 개별 회원국의 기술적 규제가 범 유럽통신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의 이용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합의정책은 다음의 7가지 대 원칙 하에서 전개되어 왔다[1].

- 유무선 통신기기 시장에 대한 완전한 규제완화
- 개별회원국의 상호인증의 달성
- 전기통신시장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 각 개별회원국에 통신설비의 규제와 운용에 대한 책임부여
- 유럽차원의 표준화기구의 설립
- WTO 체제 하에서의 무역관계 정립
- 유선 및 무선 통신기기의 상호 인증 및 CE-Marking²⁾에 의한 표준화의 촉진

2. 유럽연합의 합의정책 형성과정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통신분야의 합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왔던 조치는 각 단계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단계: 합의정책 의제형성 단계

유럽연합차원의 합의정책 추진을 위한 제1단계는 합의정책과 관련한 의제형성(agenda setting)단계이다. 유럽연합에서 유·무선통신기기 규제분야의 합의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의제형성 시도는 유럽

연합 형성이전 유럽 공동체의 1987년 녹서인 “통신 서비스와 기기의 공동 시장의 구축에 관한 녹서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equipment: Green Paper 1987)”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해당 녹서는 유럽공동체 시장내 유·무선통신기기들의 제조, 유통, 판매의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원칙인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 방식(new and global approach)”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유·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술규제 기조인 합의정책의 탄생과 형성에 일조하였다[2].

나. 제2단계: 합의정책 의제의 구체화를 위한 지침 제시 단계

다음으로 녹서 등에서 제시된 합의정책과 관련한 각종 의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침을 제정³⁾하고 해당 지침의 내용을 따르도록 각 회원국들에게 제시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 산출된 각종 의제의 산출물로서의 녹서는 합의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목표에 따라 지침으로 입법화 되었다. 이러한 지침은 유럽시장에서 유·무선통신기기의 자유로운 유통과 출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규제원칙을 정하고 소위 CE-Marking 제도에 의한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몇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최초로 제정된 지침에서는 주로 유선통신기기의 유통과 출시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기술규제제도와 CE-Marking 제도를 병존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후 개정작업을 통해 무선통신기기 역시도 이러한 제도의 틀에서 운영되

2) CE-Marking에서 CE란 “Communtant Europeen”이란 불어표현의 약자이다.

3) 유럽연합에서 공포하는 지침은 녹서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 원칙을 제정하는 입법조치로서 지침의 제정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해당 지침의 제정은 주로 이사회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 역할론이 대두하면서 최근 제정되는 지침들은 대부분 이사회와 의회의 공동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는 지침의 명칭이 “COUNCIL DIRECTIVE ~”와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의 형식으로 병존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정지침인 “유·무선통신기기 및 이러한 기기들의 적합성에 관한 상호인정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199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1999 on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an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ir conformity: R&TTE 지침)”은 유·무선통신기기에 대한 CE-Marking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 시행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3].

다. 제3단계: 후속조치의 실시단계

합의정책 추진의 제3단계는 R&TTE 지침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secondary legislation)의 실시 단계이다. 이러한 후속조치는 유럽연합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선 유럽연합의 유럽집행위원회는 명령(regulation) 또는 결정(decision)을 제정하고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시행조치를 실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을 실행하기 위하여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기존에 적용하여 왔던 유럽공동기술기준(Common Technical Regulation: CTR)을 유럽표준(European Norm: EN)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개별 회원국들은 R&TTE 지침에서 각 회원국의 법률로서 12개월 이내(2000년 4월 8일까지)에 지침을 준수하는 필요한 법률(law), 규정(regulation), 행정적 규정(administrative provision)을 채택, 공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R&TTE 지침 제19조)에 따라 해당 규정에 부합토록 각국의 통신법 및 관련규칙 등을 개정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전파 및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시행령(Radio Equipment and Telecom Terminal Equipment Regulation 2000: R&TTE Regulation 2000)”을 제정하여 2000년 4월 8일부터 시행하였고 동 시행령에서 R&TTE 지침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규정을 폐지하거나 통

신법 내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정지하였다[4],[5].

III. 개별 회원국의 무선통신기기 기술 규제 운영구조

1. 개별 회원국 기술기준과 유럽연합의 유럽 표준의 의의

유럽연합에서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규제 운영구조는 유럽연합 차원의 CE-Marking 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와 개별회원국 차원의 기술기준체도로써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연합 차원의 유럽표준과 개별회원국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효력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기술표준과 기술규정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에 관한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98/34/EC 지침)” 제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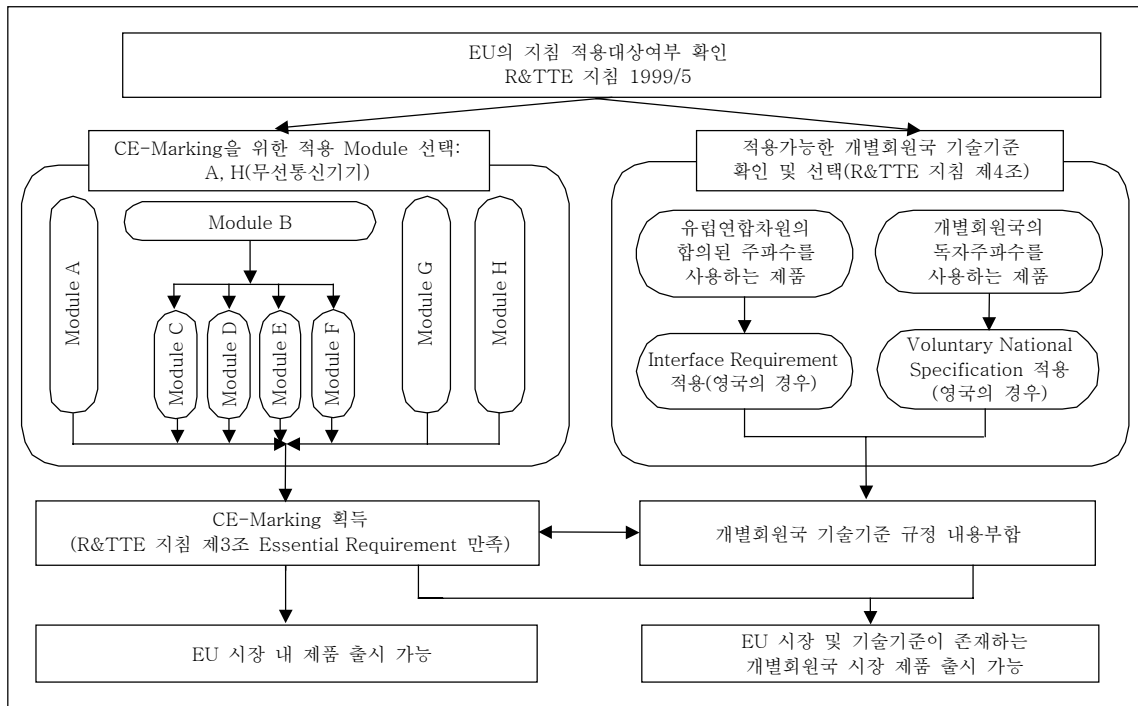
2. 개별 회원국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 운영구조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차원의 유럽표준과 개별 회원국 기술기준이 혼재하여 운영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제도는 다시 “개별 회원국의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유럽연합에서 정한 유럽표준만이 존재하는 경우”와 “유럽연합이 정한 유럽표준과 개별회원국의 기술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의 유선통신기기에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기기는 유럽표준에 의한 CE-Marking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후자는 대부분의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해당기기는 유럽표준에 의한 CE-Marking 조건과 더불어 개별회원국이 정한 기술

<표 1> 개별 회원국 기술기준과 유럽연합의 유럽표준과의 관계

구분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 ¹⁾	유럽표준(Technical Standard)
주체	개별회원국(Members State)	공인된 표준화기관
강제력	있음(compulsory)	없음(not compulsory)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규격 및 기타의 요구조건과) 관련된 행정 규정을 포함하고 준수여부가 강제적인 기술규격 및 기타의 요구조건²⁾ • 기술규격 및 기타의 요구조건 또는 업계 규약(profession codes), 실천 지침(code of practices)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또는 행정 규정 • 제품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재정 또는 재무적 조치와 관련된 기술규격 및 기타의 요구조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공인된 표준화 기관 ³⁾ 에 의하여 채택된 기술규격

주 1) 'Technical Regulation'을 내용상 기술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술기준으로 해석하되 부분적으로 기술규정을 혼용하여 사용토록 함
 주 2) '기타의 요구조건'이란 기술규격 외 소비자, 환경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품에 부과되는 요구조건을 의미함
 주 3) '공인된 표준화기관'은 유럽표준화기구(ETSI, CEN, CELEC), 국제 및 개별 국가표준화기구를 의미함



(그림 1) 개별회원국 기술기준 운영구조 요약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무선통신기에 적용이 되는 기술기준의 경우에는 유럽연합통신위원회(European Communications Committee: ECC)⁴⁾가 정하는 “합의된 주파수(harmonized frequency)”

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라도 각기 다른 기술기준을 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통신위원회가 정한 합의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기에 대하여는 “인터페이스 요구조건(Interface Requirement: IR)” 형태의 기술기준을, 그러하지 아니한 기기의 경우에는 “국가독자규격(Voluntary National Specification: VNS)”을 활용한다. (그림 1)은 이러한 개별회원국의 기술기준 운

4) 유럽연합통신위원회(ECC)는 2001년 10월 이후 유럽연합의 전기통신위원회(ECTRA)와 유럽전파통신위원회(ERC)가 통합된 조직이다. 이 이전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합의된 주파수대역 결정은 유럽전파통신위원회(ERC)가 담당하였다.

영구조를 도식화해 본 것이다.

IV. 영국의 무선통신기술기준 운영 제도

1. 기술기준의 주요 제정 내용

영국의 기술기준의 대상기기는 전파자원 사용시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허가 면제대상이 되는 기기로서 해당 기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의 제정내용이 되는 주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7].

- 주파수 대역(frequency band)
- 당해 주파수 대역에서의 무선서비스 또는 국제 전파규칙의 규정에서 제시한 서비스들에 관한 사항(radio service or services with this band including the status of these in the sense of the international radio regulations)
- (무선국 개설 등의) 허가체계에 관한 사항(licensing regime)
- 전파지정형식(reference specification assumed to be fulfilled in frequency planning and defining the equipment)
- 채널 간격 및 방사형식(channel spacing and designation of emission)
- 최대전송출력(maximum transmit power limit)
- 채널 접속프로토콜의 듀티사이클(duty cycle of channel access protocol)
- 이중화 기능에 관한 사항(duplex operation if possible)
- 무선국 운용자의 허가조건(possible need for an operator's certification)
-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부가적인 제약조건(other restrictions concerning the use of band)
- 상기 사항들과 관련하여 계획되거나 예정된 변경사항(planned or foreseen changes in the above)
- 기타 사항(re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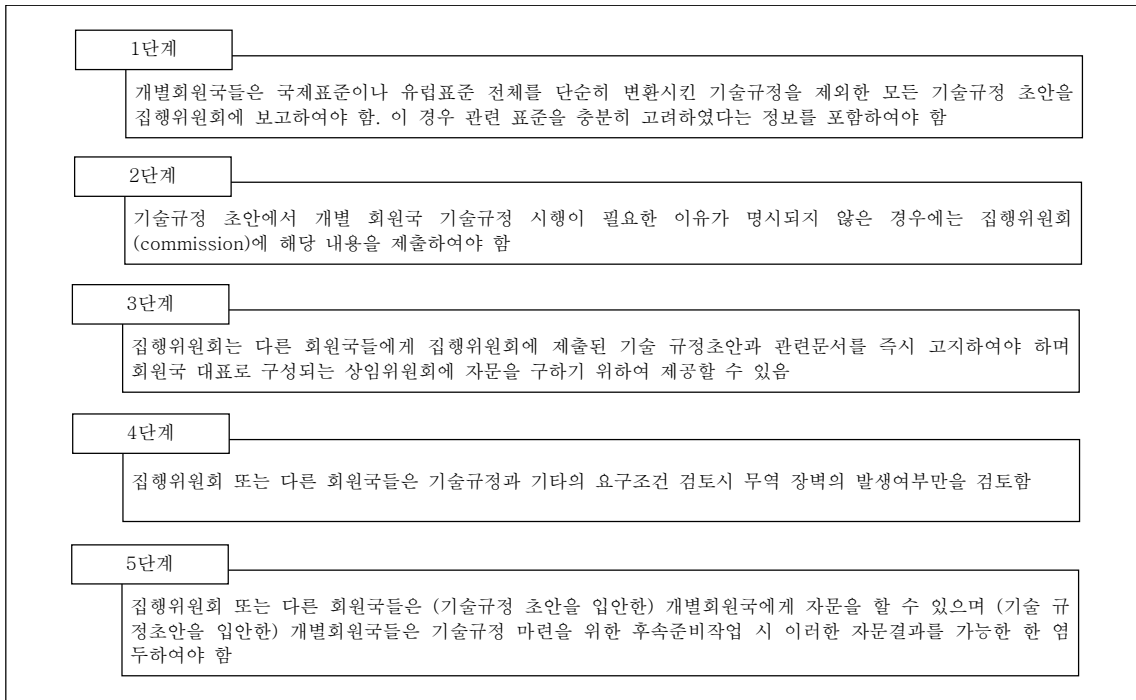
2. 영국 무선통신기기 관련 기술기준의 주요 제정절차

가.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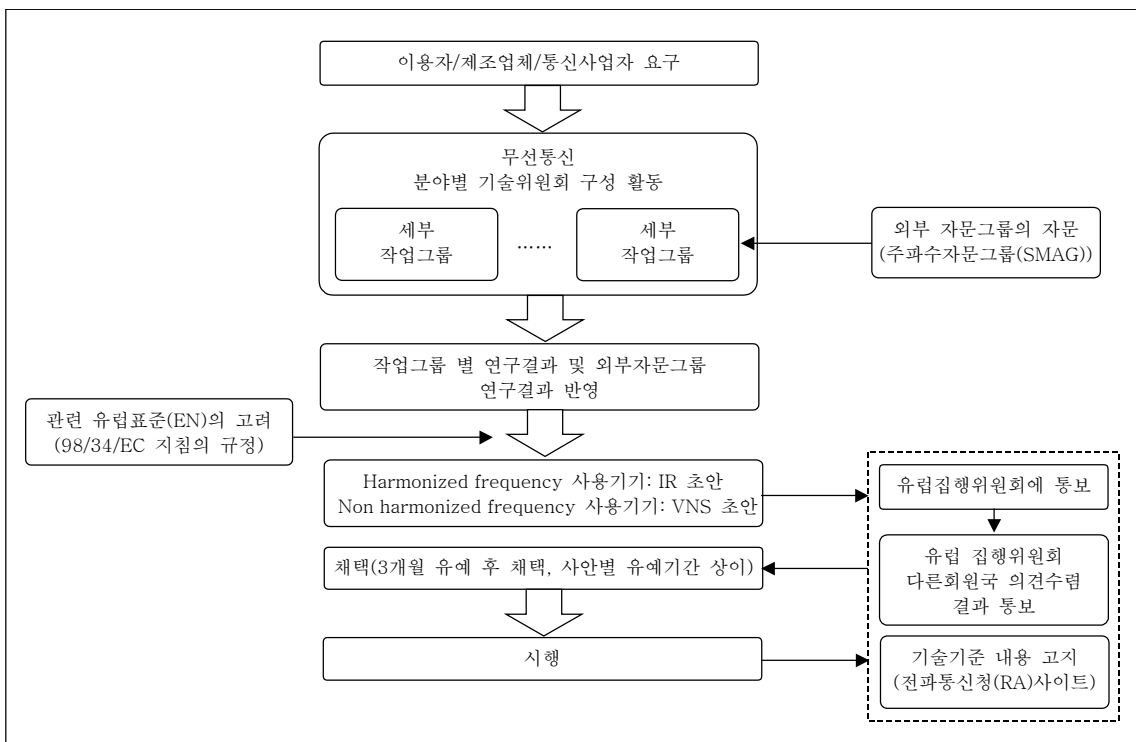
우선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 기술기준의 제·개정 절차는 98/34/EC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동 지침은 제8조에서 개별회원국들의 모든 산업분야의 기술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해당 지침의 규정에 따라 무선통신기기 기술기준의 제·개정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시하고 이를 통보해야 한다.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한 영국의 기술기준의 입법 흐름은 (그림 2)와 같다[6].

나. 영국 내에서의 기술기준의 입법흐름

한편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영국 자체 내에서의 기술기준의 입법과정은 (그림 3)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국에서 시행, 운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술기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는 방식에 따라 그 입법절차 및 사후관리 등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영국의 기술기준은 앞서 유럽표준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력을 지니는 정부규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입법통제 대상이 되는 위임입법인지 그렇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재량적 입법인 소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박영도의 연구는 영국의 법령 등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정법(Statutory Instrument Act)"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위임입법의 경우로서 위임입법이 입법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집행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와 당해 위임입법에 대하여 상위의 법규범인 국회제정법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8], 이를 영국의 기술기준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기술기준은 영국 의회가 직접 통제하는 의회 제정법규가 아닌 장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기술 행정 입법이며 단지 통신 사업자 등 특정한 개인의



(그림 2)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한 기술기준의 입법과정



(그림 3) 영국 내에서의 기술기준의 입법과정

권리의무에만 관련성을 지니는 행정 집행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영국내 공식적 입법절차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국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앞서 살펴본 지침 98/34/EC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림 2)에서 제시한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절차는 준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영국 내 기술기준을 적용 받는 무선통신 기기의 출시

이제까지는 유럽연합 및 영국의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규제 운영동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영국에서의 무선통신기기의 출시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의 무선통신기기의 출시는 CE-Mark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듈 별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러한 CE-Marking은 무선통신기기가 R&TTE 지침의 필수적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 ER)의 원칙에 부합함을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로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외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 영국 정부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의 CE-Marking과 더불어 해당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출시 과정은 무선통신기기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지의 여부와 CE-Marking을 부여할 수 있는 유럽표준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된다[9]-[11].

가. 합의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1) CE-Marking을 위한 유럽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 제품이 R&TTE 지침의 필수적 요구사항의 원칙을 만족하고 관련 유럽표준의 규격에 부합하며 동 지침에서 규정한 모듈에서 규정한 바대로 지정기관(Notices Body: NB)이 개입, 제품 검사 과정을 거쳐서 CE-Marking 표지를 부착하였다면 제품출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영국에 제품을 출시

코자 하는 제조자는 유럽표준과 영국의 기술기준(IR)에 부합토록 제품을 제조하여야 한다.

2) CE-Marking을 위한 유럽표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이 경우 각 제조자는 R&TTE 지침에서 규정된 바대로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작성하고 지정기관(NB)에 제출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R&TTE 지침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필수적 요구사항(ER)을 만족함을 통보 받은 후 이를 개별회원국의 규제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일단 제품의 출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 발생시 개별회원국 규제당국은 제품 관련 유럽표준의 부재 또는 결함에 관한 사항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유럽연합차원의 유럽표준의 마련 또는 보완을 촉구할 수 있다.⁵⁾ 영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다만 이 경우 영국에서 정한 기술기준(IR)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기

이 경우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관련 유럽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제조업체는 R&TTE 지침에서 규정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정기관(NB)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필수적 요구사항(ER)을 만족함을 통보 받은 후 이를 규제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R&TTE 지침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 영국 내 이러한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VNS)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토록 한 후 제품을 출시한다.⁶⁾

5) 이 경우 부여되는 CE-Mark는 CE0000의 형태로 이는 지침을 만족하는 합의표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와 지침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의 전반적인 조사를 요하는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부여된다.

6) 이 경우 부여되는 CE-Mark는 CE0000!의 형태로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기 또는 차후에 규제대상이 될 주파수로서 유럽연합 회원국 1개국 이상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에 부여된다.

4. 기술기준적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영국의 기술기준을 적용 받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파통신청 산하 8개의 지방청⁷⁾이 수행한다. 각 지방청은 기 설치된 무선통신기기가 면허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었는지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R&TTE 지침에 시행이전과 시행 이후에 해당 기기가 부여받은 인증 조건과 영국 기술기준 관련사항이 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면허조건에 일부 부적합한 기기가 발견되었을 경우 각 지방청 담당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발할 수 있으며 면허조건을 완전히 위반하여 운용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수색영장의 집행, 증거의 수집,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한 피의자 심문 등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12].

V. 결론

이상에서 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규제동향을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선통신기기의 규제의 경우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의 이원적 규제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은 개별 회원국들의 하나의 느슨한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체 유럽연합의 입장과 개별국의 입장이 절충되는 합의체적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규제 정책은 유럽표준과 이의 인증제도인 CE-Marking으로 대변되는 유럽연합차원의 기술규제정책과 개별 회원국들의 기술기준으로 대변되는 기술규제정책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띠게 된다. 이러한 이원성은 무선통신기기가 해당 기기의 운영 시 필연적으로 혼신성, 간섭성을 내

재하고 있는 전파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연합차원에서 통일적이고 확일적으로 전파운영 환경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개별국들이 자국의 전파 환경에 부합토록 기술적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원적 규제 환경에서 유럽연합차원에서 결정하는 유럽표준과 개별국 차원의 기술기준과의 명확한 역할을 구분짓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지침 98/34/EC의 세부 규정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동 지침은 무선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유럽표준과 개별국의 기술기준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도 활용되며 유럽연합의 표준과 개별회원국의 기술기준을 개념화 하고 개별 회원국의 기술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유럽연합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이중적 규제구조의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의 운영 구조를 조명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Rudi Bekkers and Jan Smits, Mobile Telecommunication: Standard, Regulation, and Applications, Artech House, 1999, pp. 64 - 68.
- [2] EU Commission,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Equipment," 1987.
- [3] EU Commission,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The "Blue Guide")," August 1999.
- [4] UK HMSO, Wireless Telegraphy Act 1949, 1967, 1998.
- [5] UK HMSO, The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Regulations 2000.
- [6] EU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98/34/EC OF THE EUROPEAN PAR-

7) 2002년 8월 현재 전파통신청 산하 8개의 지방청은 North West England, North East England, North West England, South & South West England, Midland & East Anglia, London and South East England, Scotland, Wales 지역에 있음

- 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1998 laying down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204*, 21 July 1998.
- [7] UK Radio Agency, "Radiocommunications Agency's Local Offices," *RA Information Sheet 206*, August 2002.
- [8] 박영도,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99-04, 한국법제연구원, 1999. pp. 124 - 170.
- [9] Bert van Dijk and Simon van Merkom, "Notes on The R&TTE Directive 1999/5/EC," *CEPT/ERC doc.nr. TG2(00)02rev2*, March 2000.
- [10] EU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DIRECTIVE 1999/ 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1999 on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and the mutual recognition of their conformit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091*, 4 July 1999.
- [11] UK Radio Agency, "FAQs on The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Regulations 2000," June 2000.
- [12] UK Radio Agency, "UK Radio Interface Requirements," *Draft version*, April 2000.